



상표권 분쟁과 소송

- 상표권 침해분쟁에 관한 법적쟁송
- 민사 가처분 및 본안소송
- 형사법 절차

1. 쟁송 방법

19

❖ 특허심판원을 통한 쟁송

- 무효심판/취소심판
- 권리범위확인심판
- 정정심판
- 정정무효심판

❖ 일반 민·형사상의 쟁송

- 생산, 판매, 배포행위 등 금지하는 침해금지청구권
- 손해배상 청구권
- 신용회복 청구권
- 형사 고소

3. 생산, 판매 등 금지청구의 예

21

1. 피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상표를 사용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제품, 그 포장지, 포장용기, 선전광고물을 생산, 판매, 반포, 수입, 수출, 전시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위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.
2. 피고는 피고의 사무소, 공장, 창고, 영업소, 매장에 보관 중인 별지 목록 제1항 표시의 상표를 사용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제품 및 반제품, 포장지, 포장용기, 선전광고물에 대한 점유를 풀고, 이를 신청인이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.
3. 집행관은 위 제1항의 경우에는 그 금지의 취지를 공시하기 위하여, 제2항의 경우에는 그 보관의 취지를 공시하기 위하여 각 적당한 방법을 취하여야 한다.
4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

5. 본안소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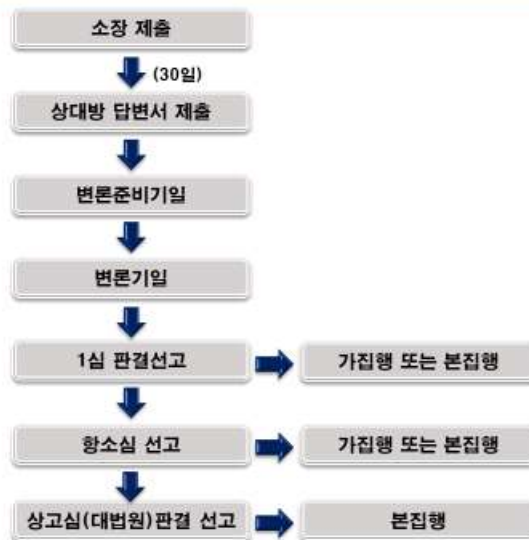
25

❖ 개요

- 침해금지청구, 손해배상청구 단독 또는 동시 청구
- 침해금지청구 : 침해예방청구 또는 침해품 폐기청구도 가능
- 손해배상소송 :
 - 침해판단과 손해배상액 산정의 2단계 진행
 - 손해액 입증자료 확보 어려움. 문서제출명령 활용
 - 상표법 제67조에 의한 손해배상액 산정방법 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입증하여야 함 - 재판부가 최종적으로 재량에 의해 손해액을 산정하기도 함.

11. 소송 절차

32



14. 보전소송 - 제조판매금지가처분 신청

35

❖ 가처분 소송 신청과 진행

- 신청방법
 - 금지청구만 가능
 - 침해금지대상을 정확하게 특정해야 함. 집행 가능하도록 유의
 - 단, 금지대상은 결정시까지 변경 가능
- 신속한 재판 진행
 -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청서 접수 후 2~3주일 내에 심문기일 지정, 1회 심문으로 종결될 수 있음. 평균 4~5 개월 소요
 - 검증, 감정을 채택하는 경우 많지 않음
 - 소명에 의한 판단. 심문종결 후 결정일까지 소명자료 제출가능
 - 무효항변 허용(보전의 필요성 구비여부)

16. 보전소송 불복절차

37

❖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패소한 사용자의 구제방법

-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: 동일 재판부
- 가처분결정의 집행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
- 본안제소명령 신청
- 가처분결정 취소신청/해제신청
- 이의신청 사건 패소시 고등법원 항고
- 대법원 재항고

상표권분쟁과 형사법 문제

- 특허침해 분쟁과 달리 형사 고소가 빈번함.
- 대표이사를 피고소인으로 하는 경우 문제
- 형사영역에서는 피고소인 변호인 제도만 있음.
- 대리인 제도가 없음. 본인 조사가 불가피한 경우 있음.
- 실무 담당자로서는 큰 낭패 !!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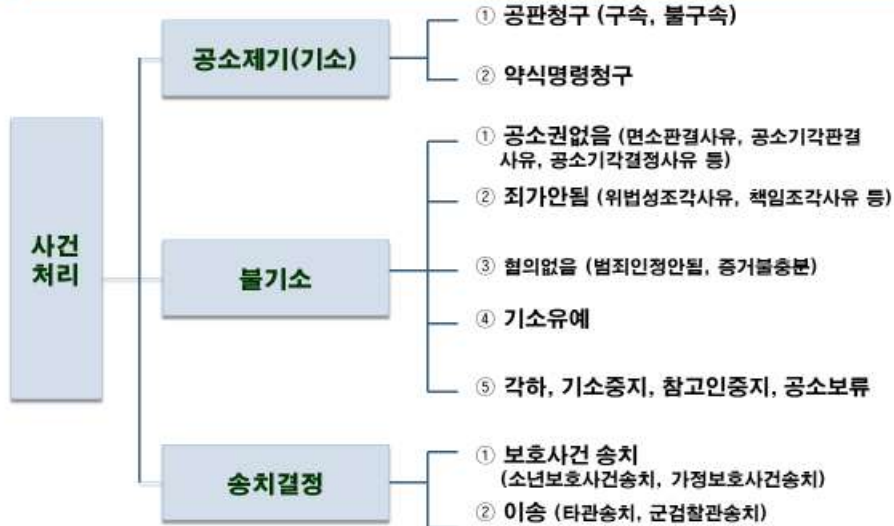
1. 형사사건 절차의 개요

40

- ① 수사의 개시
 - 수사는 범죄의 혐의 유무를 밝혀 공소를 제기, 유지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활동을 의미
 - 수사의 단서 : 고소, 고발, 인지, 자수, 진정 등
- ② 수사기관의 수사 및 수사종결
 - 경찰, 검찰 (수사지휘, 기소여부 결정)
 - 검사는 범죄사실이 명백하게 되었거나 또는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수사를 종결함.
- ③ 검찰의 공소제기
- ④ 공판절차

2. 형사 사건처리의 태양

41



3. 형사고소

42

-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 등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
- 고소의 대리 가능 (형사소송법 제236조)
- 고소의 방식 : 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함,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함(형사소송법 제237조).
- 고소기간 :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함, “범인을 알게 된 날” 이란 적어도 범인이 누구인가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알게 된 날을 말하며, 반드시 범인의 주소, 성명까지 알 필요는 없음.

4. 고소·고발, 진정사건 조사 흐름도

44



4. 고소·고발, 진정사건 조사 흐름도

45



변리사22년/변호사 14년, 심판소송, 상표/디자인/저작권/부정경쟁분쟁 One-Stop 대응

T. 02-591-0657 E. kkh@kasanlaw.com H. www.kasanlaw.com